

공지사항

〈ISO 14001〉국제환경규격초안 확정 안내

기업의 환경경영 체제에 대한 국제인증규격(ISO 14001) 초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환경처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경영체제 분과위원회는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환경경영체제 국제 인증규격 초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ISO 14001 규격은 환경친화적인 경영방침과 관리체제를 갖춘 기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규격으로 앞으로 상품의 국제무역에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에 합의된 환경경영체제 규격 초안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관리 기본 요건으로 최고경영자의 환경방침 선언, 환경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환경계획의 이행과 운영, 지속적인 점검과 수정활동, 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 등 17개 핵심항목이 규정돼 있다.

한편 국제인증 규격 초안 확정에 따라 주무부서인 공업진흥청은 실무작업반의 최종 확정 및 국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앞으로 KS규격에 이를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ISO 14001 규격 초안 작성에 참여해 오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말의 ISO 표준화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에 대비, 현재 경영자 총협회를 중심으로 초안을 관련기관 및 업계에 배포, 최종업계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ISO규격이 확정되는대로 이를 국내 규격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환경규격에서는 수입제품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환경피해 뿐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출국가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까지 무역에 연계시키는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초안 확정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별 공경별 오염물질 및 요인 등을 조사분석하고 환경기술 장기계획 수립 등 정부는 관련기관 및 업계와의 공동 대책을 적극 마련,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환경규격 초안 확정에 따라 도금, 피혁, 염색, 제지, 제철, 제강, 시멘트, 비료 제조업 등과 금속, 기계, 섬유, 화학제조업 등 생산공정에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의 환경규격 대응 경영체제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평균실제소요량신고서 작성요령 개정 안내

제조장별로 관할세관에 분리 신고해야 하던 평균실제 소요량을 앞으로는 통합신고 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관에 평균실제 소요량 신고서를 제출하고, 2이상 제조장에서 동일제품을 동일 원재료로 생산하는 업체인 경우 제조장별로 각각의 평균실제 소요량 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통합신고 할 수 있도록 고쳤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평균실제 소요량 작성요령을 지난달 26일 일선 세관에 시달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이상의 제조장에서 동일원료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인 경우 종전대로 제조장별로 평균실제 소요량을 신고하거나 본사 또는 주제조장에서 통합, 일괄신고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행정규제완화의 하나로 현행 제도상 통합신고 제도가 없어 민원인이 제조장별로 각기 따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지사항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술수출 직접지원 안내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현장 생산기술을 축적,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체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이를 체계화하지 못해 기술수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정부가 직접 기술수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중 수출이 유망시되고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 내용의 체계화, 기술설명서 작성 등 기술문서화를 추진키로 하고 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동사업을 추진토록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수출 대상업체를 발굴, 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장기술의 서류화에 필요한 자금의 50%를 지원하고 기술수출이 실현된 후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문서화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수출가능 기술은 DB화해 종합관리하고 종합상사와 수출기능과 연계시키는 한편 APEC 테크노마트, 대개도국 테크노마트 등을 통해 기술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기술무역적자폭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 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요 개도국과의 산업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기업의 기술수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기술무역 적자폭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총 9억 4,6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반면 기술수출은 총 4,500만 달러 상당으로 9억 이상의 기술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술수출 규모는 미국의 178억달러, 일본의 28억달러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

계됐다.

이처럼 국내기업들의 기술수출이 부진한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체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을 수출상품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술도입시 개량기술에 대한 제3국 수출제한 등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깊이 있는 시장정보와 마케팅능력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출보험제도 대폭 개편 안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수출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수출보험제도 전반을 개편,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어음보험 등 주요 종목의 부보율 및 보상률을 대기업의 90%보다 높은 95%로 확대하고 기존의 수출 신용보증제도를 중소기업 전용제도로 개편, 선적전 신용보증까지 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선적후 신용보증의 대상 거래 및 신용기간도 기존의 1년 이내의 어음거래에서 2년이내의 어음거래 및 무어음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농수산물 수출보험과 시장개척보험, 단기수출보험 등 3개 보험 종목이 신설되고 이용실적이 미미한 일부 보험이 폐지됐으며 해외투자보험, 해외공사보험 등은 담보범위가 확대됐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무역박람회, 해외전시회 참가, 광고·홍보물 제작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고도 수출 증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입을 수 있는 손해위험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개척 보험의 부보율은 보험가액의 50% 이내(중소기업은 60%이내)로서 손실액중 부

***** 공지사항 *****

보을 만큼 보험금이 지불된다.

또 농수산물 수출보험(미가공 농수산물 한정)을 신설, 수출계약후 작황 부진에 따른 수출불능, 대금 미회수 위험, 가격변동 위험 등에 대해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이내 범위에서 선적 전·후 모두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가격 상승으로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담보해 주는 대상은 우선 규격화가 가능한 사과, 밤, 배, 버섯, 굴, 김, 돼지고기, 화훼 등 8개 품목에 대해 수출보험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등 이용실적이 없거나 이용가능성이 낮은 3개 보험종목을 폐지하는 한편 중장기 연불수출보험과 수출대금금융보험을 통합해 중장기 수출보험으로 개편, 종전까지 중장기 자본재거래로 한 하던 지원대상을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 품목제한을 폐지했다.

수출보험 종목개편 내용

현행	개편후	비고
(신설)	○ 단기수출보험 ○ 농수산물수출보험 ○ 시장개척보험	○ 3종목 신설
위탁판매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폐지)	○ 이용가능성 전무
일반수출보험	(폐지)	○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험으로 흡수
수출어음보험	○ 수출어음보험	○ 제도개선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 중장기수출보험	○ 통합
해외건설공사보험	○ 해외공사보험	○ 제도개선 및 명칭변경
수출보증보험	○ 수출보증보험	○ 제도개선
해외투자보험	○ 해외투자보험	○ 제도개선
수출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	○ 중소기업전용으로 개편
10종목(9보험, 1보증)	9종목(8보험, 1보증)	

해외건설공사보험은 해외공사보험으로 명칭을 바꿔 기존의 담보대상인 해외공사 이외에 공사용 장비까지도 추가해 장비의 반출 불능에 따른 위험을 덜도록 했다.

해외투자보험은 기존의 담보대상인 주식, 사채, 대출금채권, 부동산권리 등 취득형태의 투자 이외에 사채 및 대출금채권에 대한 채무보증형태의 투자도 담보대상에 추가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같은 수출보험제도의 개편으로 내년의 수출보험인수 예상액은 8조 8,000억원으로 늘어 총수출액에서 수출보험을 이용한 수출의 비중이 올해의 6.4%에서 11.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OTRA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업체모집 안내

KOTRA에서는 해외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외무역관을 지사로 활용토록하는 "KOTRA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전세계 81개무역관을 개방하여 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수출거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왔다.

1년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동사업은 12월 31일로 94년도 사업회기가 완료됨에 따라 '95년도 신규업체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제위께서는 아래 신청 요령을 참조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사업명 : '95 KOTRA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2. 지원내용
 - 바이어 및 인콰이어리 최우선 소개
 - 해외 세일즈 출장시 상담주선 및 지원
 - 시장개척단 파견시 우선 선정
 - 바이어와의 거래교신 지원

***** 공지사항 *****

3. 선정기준

- 1개 업체당 최고 5개 무역관까지 지사로 연결
- 신청 경쟁시 품목 시장성, 업체 희망순위 우선고려
- 동일분야, 동일무역관에 다수업체 신청시

내부기준에 따라 조정

- 4. 운영기간 : '95. 1. 1.~12. 31(12개월)
* 단, 94년도 지사업체로 선정된업체는 우선 선정권 부여
- 5. 문의처 : KOTRA(Tel : 551-4368)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현황 안내

('94. 10월말 현재)

과 제 명	개 선 방 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유통B-1. 자연보전권역의 집배송용 건축물내판매용 및 업무용 시설 허용범위 조정	○ 환경오염 유발이 적은 집배송용 건축물내 판매용 및 업무용시설의 건축 허용범위를 건설부, 환경처 등의 합동용역 결과를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 환경처, 건설부, 서울시, 경기도 합동용역 진행중 ('94. 8~'95. 8)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95 하반기) - 관계부처 협의시 규제완화 내용 통보, 반영요청
유통B-2. 물류시설용지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	○ 공업단지개발시 공장용지와 물류시설용지를 동일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진행중(법제처 심사중) ※ 개정안 제40조에서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 용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유통B-3. 매장면적 1,000㎡이상 영업장 개설에 대한 규제완화	○ 양관점·활인점 등 신규 선진업체에 대한 규정 신설 ○ 개설허가대상면적을 3,00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000㎡~3,000㎡미만은 신고제로 전환 ○ 대형점, 도매센터 등의 100% 직용·100% 도매 운영기준을 70% 수준으로 완화	○ 『도소매업진흥법』 개정 진행중(국회심의중) ※ 개정안 제2조에서 대형점을 양관점·활인점·종합점·전문점 및 편의점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도·소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으로서 직영형태로 운영되며 매장의 임대 및 분양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개정사항 검토 - 업체별 허가기준에 관한 연구('94. 12)
유통B-4. 도시계획지역내 설치가능한 창고시설의 범위 확대	○ 창고시설의 개념을 단순창고·하역장 뿐 아니라 수발주 처리 등 유통정보화 시설을 갖춘 현대적 창고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다 구체화	○ 시·도에 업무지시 시달(건축 58070-2191호, '94. 7. 1) - 유통정보화시설을 갖춘 현대적 창고도 건축물 용도 분류상 창고시설로 적용
유통B-5. 대도시지역내 물류센터 설립·이전시 등록세 중과세 면제	○ 물류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설 등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소를 갖춘 물류센터에 한해서 등록세중과 면제	○ 집배송센터 실태조사 실시('94. 11~'95. 1) - 설치현황 및 조성상 애로사항 등 ○ 중과면제 대상을 구체화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요청

***** 공지사항 *****

과 제 명	개 선 방 안	추 진 현 황 및 향 후 계 획
<p>유통B-6.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이 인정되는 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해 공업단지조성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혜택 부여 - 현재 유통단지에 대한 개념이 유통근대화 촉진점상 유통단지, 도소매업진흥법상 공동집배송단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등 복잡다기한 바 - 조세감면을 요구하는 유통단지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 - '94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전면개정조정이 필요한 바 추후 타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 진행중(관계부처 협의)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에 따른 감면방안 검토('95. 1. 4) ○ 『지방세법』 개정('95. 상반기) - 관계부처 협의서 우리부 감면승인 반영요청
<p>유통B-7. 창고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적용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고용 토지중 물류센타내 창고용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배송센타 실태조사 실시('94. 11~'95. 1) - 설치현황 및 조성상 애로사항 등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95. 상반기) - 관계부처 협의시 규제완화 내용 반영요청('94. 11)
<p>유통B-8. 투자세액공제 대상 유통근대화시설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유통 산업근대화시설의 범위에 무인반송차 등을 포함하고 대상사업자 확대 ○ 저온보관고·포장기·판매용 진열대의 적용범위를 농수산물에 한정하는 내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근대화시설증 조세감면 수요조사('94.11~12)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개정('95. 3) - 관계부처 협의시 우리부 입장 반영요청
<p>유통B-9. 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산정대상범위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치장 토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 기준을 현행 월평균 최대사용면적의 1.2배에서 과거 3년간 최대 사용면적의 1.2배로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 진행중 - 관계부처 협의시 규제완화내용 반영요청('94. 12)
<p>유통B-10. 물류시설용 건축부지에 대한 취득세 증과대상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설 건축용 부지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 기준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공장용 부지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95. 상반기) - 관계부처 협의시 규제완화 내용 통보('94. 11)
<p>유통B-11. 공산품 도매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산정기준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시장을 세분화하여 오염 유발이 적은 공산품도소매시장의 수질오염유발계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 진행중(관계부처 협의중) ※ 개정안 [별표 4]에서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의 수질오염유발계수를 현행 1.29에서 1.0으로 하향 조정
<p>유통B-12. 도소매업에 대한 유상증자 조정기준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 유상증자 선별 및 조정기준 개정 - 유통업체의 물류자동차·정보화설비 용도의 시설자금은 제1순위(제조업수준)으로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양회사유상증자선별 및 조정기준』 개정('94. 6) - 비제조업의 물류자동차·유통정보화 시설투자용자금은 제조업의 유상증자로 간주·포함

